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999년 9월 8일

수해조사특별위원회

I. 조사의 목적

'96년 이후 거듭되는 수해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그간 수해복구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원대책 및 항구적인 수해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II. 조사기간 : '99. 8. 25 ~ 9. 8

1. 현지확인 : '99. 8. 25 ~ 8. 31
2.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 '99. 9. 1 ~ 9. 2
3.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99. 9. 8

III.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의 범위

1. 조사대상기관

○ 파주시

- 문산읍등 12개 읍·면·동

2. 조사사무의 범위

○ 수해와 관련한 사무전반

※ 조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제17조의 3, 제17조의 4, 제18조

○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IV. 증인 및 참고인

1. 증인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파 주 시 장	송 달 용	산 립 과 장	심 광 용
부 시 장	이 창 우	건 설 과 장	윤 병 규
총 무 국 장	황 인 정	도 시 과 장	김 영 구
사 회 산 업 국 장	최 의 수	상 하 수 도 과 장	이 원 주
건 설 국 장	김 기 성	문 산 읍 장	염 인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노 직	내배수장관리인	김 은 태
회 계 과 장	우 보 명		

2. 참고인

주 소	성 명	진 술 사 항	비 고
금촌2동 778 농지개량조합	이 병 주	마정저수지 관련	대리참석
의정부시 의정부동 166-4 동일건설(주)	정 태 인	문산제1교 교량가설공사관련	
"	김 재 옥	"	
수원시 권선구 교동 47 수성산업(주)	김 진 배	문산내배수장 확장공사 관련	대리참석
장안개발(주)	김 종 승	갈곡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제6공구)	"
용인시 역북동 436-9번지 서울빌딩403호 (주)청백종합건설	임 번 상	갈곡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가야교~호명교)	"
법원읍 법원1리 431-13 (주)서원건설	이 원 호	갈곡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초리골~대능교)	

V. 조사실시 경위

- '99. 8. 7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 '99. 8. 14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안 의결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 '99. 8. 14 제34회 임시회중 제1차 특별위원회 개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위원장 : 조현묵 간사 : 이재일
- '99. 8. 19 제34회 임시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 개의
(계획서 작성)
- '99. 8. 20 제35회 임시회중 제3차 특별위원회 개의
(조사계획서 의결)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사계획서 의결
- '99. 8. 25 제35회 임시회중 제4차 특별위원회 개의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99. 8. 25 ~ 8. 31 현지확인

< 조사일정 및 장소 >

일 시	지 역	주 요 장 소	비 고
'99. 8. 25(수)	파평면	· 울곡리 침수지역 · 두포천하류 및 중간지점 · 마산2리 등용말 등용교 · 늘노리 금파교 · 객석천 · 늘노리 소하천 · 어의동천 · 금파취수장	
	적성면	· 주월리 임진강변 · 37번 국도망 · 간파천 적암교 · 설마천 · 두지리	
'99. 8. 26(목)	파주읍	· 방축천(봉암리) · 연풍3리 침수지역 · 갈곡천 · 애룡교	
	법원읍	· 갈곡천(가야리 수중보) · 가야교 · 초리골 입구교량 · 갈곡교 · 웅담3리 지역, 금곡리	

일 시	지 역	주 요 장 소	비 고
'99. 8. 27(금)	조리면	· 고산천 · 팔봉천 · 장진천 · 봉일천7리 내배수장	
	광탄면	· 마장저수지	
'99. 8. 28(토)	탄현면	· 만우천 · 갈현배수펌프장	
	교하면	· 청용두천 · 소지천 · 설문천 · 영천배수장	
'99. 8. 30(월)	문산읍	· 문산제1교 · 내배수 펌프장 · 동문천제방(선유리구간) · 마정제방	
	군내면	· 장단반도 · 용산천 · 사천내 · 어룡천	
'99. 8. 31(화)	금촌1동	· 금촌천 · 농경지침수지역(야동동,검산동,맥금동)	
	금촌2동	· 순달교 배수펌프장 · 곡능천	
	월롱면	· 능산천 · 영태5리 · 도감골천	

- '99. 9. 1 ~ 9. 2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 '99. 9. 7 제7차 특별위원회 개의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

VI.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명 칭 : 수해조사특별위원회
2. 위원수 : 12인
3.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조 현 묵	
간 사	이 재 일	
위 원	이 하 용	
위 원	우 종 호	
위 원	황 의 형	
위 원	우 관 제	
위 원	송 건 섭	
위 원	박 해 룡	
위 원	이 학 순	
위 원	이 종 필	
위 원	류 한 철	
위 원	임 병 윤	

4. 조사방법

- 수해지역 현지확인 실시
-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수해복구공사 시공사 대표 및 현장대리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현지확인 내용과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

VII. 조사결과

- ☐ 이번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해의 원인과 문제점등을 파악·분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문성의 결여로 조사결과 및 대책등이 다소 시민이 바라는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나

- 6일간에 걸친 현지확인과 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수해의 요인과 문제점을
- 첫째, 하천의 체계적인 치수관리 미흡 및 각종 수해복구사업의 지연
 - 둘째, 하천내 소교량의 문제점
 - 셋째, 내배수펌프장의 기능 약화
 - 넷째, 무분별한 산림훼손허가
 - 다섯째, 도시내 홍수방지 시설의 관리소홀
 - 여섯째, 금파취수장의 위치 부적정
 - 일곱째, 수해복구비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비현실적인 복구비 산정기준의 일곱가지로 집약할 수 있었음.

1. 하천의 체계적인 치수관리 미흡 및 각종 수해복구사업의 지연

가. 이번 수해는 1,00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서해만조 시기가 겹쳐 홍수위가 상승하는 등의 천재적인 요소가 없지 않으나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 및 '96년 수해이후 추진하여온 하천제방 승상 등 각종 수해방지대책 등이 조기에 착수되지 못하고 예산확보, 설계에서부터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에 대한 피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 1) '96년 수해이후 추진해온 동문천 제방보강공사를 하류인 문산천부터 시작하여 향양교 접속지점까지 완료하였으나 향양교는 제방보다 2m가량 낮은 위치에 있고 그 상류제방(4.5km) 보강공사를 착수치 못한 실정으로 노후 불량한 제방이 범람, 월류 유실되므로써 시가지 침수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통일로와 경의선 철도의 지반이 동문천·문산천의 제방보다 2m가량 낮아 동문천의 우수가 통일로와 철도를 월류하여 시가지로 유입되었음.
- 2) 금촌시가지의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금촌천의 흐름이 원활해야 하나 금촌지역이 저지대인 관계로 곡능천과 금촌천의 수위차가 거의 없어 홍수시 물빠짐이 좋지 못하고 곡릉천의 수위상승과 서해 만조시 금촌천으로 월류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취약지점인 철도건널목 부근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철도변 제방으로 월류,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 3) 갈곡천 주변지역은 지난 '96년과 '98년의 집중호우시에도 동일한 피해 발생지역으로 18km 구간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수해복구공사라는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 구간으로 나누어 '99. 6. 19 ~ 7. 10일 사이에 각각 발주함으로써 올해의 수해를 대비하지 못하였음.
- 4) 늘노리 마을을 관통하는 계곡이 홍수시에는 늘 범람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홍수위를 예상치 못한 낮은 제방설치와 퇴적된 토석으로 하상이 높고 하천폭이 좁아 수해에 대비한 계곡의 정비가 요구되며 늘노리를 지나가는 37번 국도상의 교량이 박스형으로 낮게 설치되어 있고 늘노천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이 협소하여 마을을 관통하는 소하천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수목이 교량과 배수문에 걸려 유수의 소통을 방해하였음.
- 5) '96년 이후 항구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능천 제방이 칠간교 부근에서 지반이 낮은 철도로 인해 연결되지 못하여 홍수시 범람할 수밖에 없고 지천인 소지천의 제방이 상대적으로 약해 곡능천의 역류와 내수를 이기지 못하여 제방이 붕괴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음.
- 6) 소지천은 상류인 일산 탄현동과 운정동에서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일산탄현지역의 대규모아파트 단지의 조성으로 폭우시 유속이 급하여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이를 예상한 치수관리가 되지 못하였음.
- 7) '96년 수해이후 항구복구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임진강 제방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제방이 낮게 성토된 구간에서 임진강이 범람하였고 장산리에서 흐르는 소하천 및 민박골천이 개수되지 않았으며 임진강 합류지점에 배수문설치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임진강의 역류현상을 초래하였음.
- 8) '96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방보강공사가 우기전에 마무리하여야 하나 과다한 예산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음.

- 9) 또한 임진강 제방보강공사를 매년 있을 홍수에 대비하여 제방고가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 성토하여야 했고 배수갑문 설치 공사로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응급대책도 마련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
 - 10) 한편, 임진강은 직할하천으로 관리청이 건교부이고 준용하천은 경기도, 지천인 소하천은 파주시로 각각 달라 임진강 수계의 항구복구사업이 연계 추진되지 못하여 항상 피해원인이 상존하고 있음.
 - 11) 통일촌, 대성동 지역은 대부분의 토질이 마사토로 형성되었고 '96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제방보강공사로 구조물이 없는 주변의 마사토를 활용하여 축조하므로써 북한측이 제방을 높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측제방의 범람이 불가피한 실정임.
 - 12) '96년 수해이후 임진강 제방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단의 제방은 계획조차 없어 빈번히 임진강으로 범람하므로써 인근 전진농장, 동파리 지역의 농경지는 무방비 상태이며 용산천을 비롯한 사미천, 도라천등 소하천은 6.25전쟁이후 오랫동안 방치된 제방과 하상등에는 수목이 무성한 천정천으로 물빠짐이 좋지 못한 실정이고 각종 지뢰, 포탄등의 폭발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적인 개수공사가 요구됨.
 - 13) 설마천, 늘노천, 간파천, 장현천지역은 집중호우시 산간계곡의 유수량이 급증하고 임진강 합류지점은 임진강의 수위증가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1,000mm가 넘는 집중폭우로 산간계곡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 및 급격히 불어난 유수량으로 제방유실과 주변농경지의 유실·매몰등의 피해를 주었음.
- 다. 하천은 그 특성상 시점에서부터 하구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으나 직할하천인 임진강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문천등 준용하천은 경기도에서, 지천등 소하천은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수해복구 사업추진시에 일관되게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곡능천 제방의 보강공사의 경우 지천으로의 역류현상을 감안하여 최소한 합류되는 하류지역의 지천제방을 보강하여야 하나 하천별(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로 관리청이 달라 상대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파주시에서는 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

한 무분별한 하천 점용허가와 하천적치물로 인한 유수소통 장애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라. 따라서 하천의 치수관리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단일한 관리주체가 일괄 관리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천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대한 장치 또한 보완되어야 할 것임.

마. 임진강과 한강등 직할하천 수계의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요구되고 수해예방을 위한 제방의 승상보다는 각급 하천의 하상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문산천, 곡능천 부지의 하상준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바. 금번 수해의 주요 원인인 동문천 개수공사의 조기 마무리와 경의선, 통일로의 승상, 그리고 곡능천 침수방지 대책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사. 곡능천 하류와 문산천 하류는 각각 한강과 임진강 수위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해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리적 특성이 동문천의 상류지역으로 갈수록 급경사의 하천 종단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유속이 빠르면 하류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홍수시 하류의 갑작스런 수위상승을 초래하여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하천 정비는 유속을 가감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임.

2. 하천내 소교량 설치에 따른 문제점

가.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소교량이 하천에 비해 협소하고 낮으며 교각이 비좁게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나무등 이물질이 걸려 유수처리 방해 및 유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해마다 상습적으로 하천제방의 붕괴와 인근지역의 매물과 주택이 침수되고 있음. 특히 두포1리, 법원1리(초리골) 교량은 암거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인근농경지 및 주택침수의 주원인이 되었음.

나. 따라서 이번 수해의 원인으로 제기된 하천내 소교량에 대한 설치는 기술상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교량을 재가설할 때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수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이므로 전수조사후 우선순위로 결정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것이며 암거식(박스형)의 교량 설치를 자제하고 기 가설된 교량들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내·배수펌프장 기능 약화

가. 각종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내·배수펌프장의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고 처리용량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실정으로 농경지 침관수의 원인이 되었음.

나. 문산 내·배수펌프장의 경우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작동하지 못하여 '96년 수해이후 20여억원을 들여 4배로 늘린 펌프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외수의 수위에 따라 배수갑문을 조절하여 자연배수토록 조치해야했으나 시기를 일실하여 내수의 수압으로 배수갑문이 작동치 못하므로써 시가지 침수의 장기화를 초래하였음.

다. 또한 내·배수펌프장이 파주시에 16개소가 있으나 금촌배수장과 문산배수장은 파주시에서, 검산배수장등 13개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문발배수장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므로써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전기공급이 중단시 이를 가동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라. 따라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내·배수장에 대해서는 침수에도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이 검토되어야 하며 전기공급의 중단시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임.

또한 내배수장의 신설 및 용량 증설에 있어서도 배수용량에 적용하는 빈도를 현재 적용하는 빈도보다 올해의 홍수량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4. 무분별한 산림훼손 허가

가. 석산개발등 무분별한 산림훼손허가로 토사와 석분등이 하천과 농경지에 유입되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특히 법원읍 금곡리의 금정석산, 덕천리 우암물산, 마산리 평산석산 일대에 채석장의 석분이 인근농지와 소하천으로 유입되어 많은 농지

및 하천제방이 매몰·유실되었음.

다. 따라서 이들 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향후 석산개발 허가에 있어서는 피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되어야 할 것임.

5. 도시내 홍수방지시설 관리 소홀

가. 홍수피해는 외수침수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국지성 호우로 인한 내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도시내의 배수시설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지의 침수원인이 되었음.

나. 따라서 재해예방차원에서 도시지역의 하수구를 주기적으로 준설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앞으로의 홍수추세를 감안하여 배수시설 용량등을 결정하여야 할것임.

6. 금파취수장의 위치 부적정

가. 금파취수장은 강변저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임진강 범람시 침수가 불가피한 실정임.

나. '96년 수해를 경험으로 유사한 홍수시를 대비하여 임진강변에 옹벽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홍수위선 상부로 승상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시설복구에 급급한 면이 있었음.

7. 수해복구비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비현실적 복구비 산정기준

가. 수해발생시 피해상황 기초조사부터 확인조사, 중앙심사, 지원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복잡하여 복구비가 현금으로 집행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수재민의 불만이 야기되고 복구가 지연되고 있음.

나. 수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1) 현행 구호비 기준은 1인 1일에 2,226.8원과 생계구호비 지급 기준일을 7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1인 1일 5,553(월 166천원)]보다 지급기준이 낮음.

2) 침수지역의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의 경우 건물아래 저층의 침수로 피해를 입게된 고층 거주 이재민에 대한 구호 및 지원기준이 없음.

- 3) 현행법령상의 피해복구비 지원대상에는 침수상가의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상품피해나 공장건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가 전혀 없음.
- 4) 주택침수에 있어 일부·완전 침수를 구분 복구비를 지원하였으나 개정이후에는 일괄 60만원의 주택수리비를 지급토록 조정됨으로써 복구비 지원액이 일부 침수는 15만원이 상향되었으나 완전 침수는 15만원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도 아직은 현실비용에 크게 못미치는 낮은 수준임.
- 5)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없어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영세민과 영세사업자의 재할대책이 막연함.
- 6) 경작규모 5ha이상에 대해서는 이재민 구호비등 혜택이 전혀 없으며 농작물 재배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기준에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비 지원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유리온실, 자동화시설, 양액재배시설등의 피해복구비는 반영되지 않아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임.
- 7) 600㎡이상의 전업 축산농가의 지원기준이 용자 50%에 불과하여 복구를 포기하고 있을뿐 아니라 착유기, 냉각기등 축사 내부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고 기존의 대단위 축산농가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므로 복구에 따른 용자금의 수혜를 받을 능력이 없음.
- 8) 현행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보면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당해 가구 총수입의 50%이상에 달하는 생계수단)인 농·어업인이 재해를 입은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지원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당해 농·어업인의 가족중 1인이 직장에 다닐 경우 영세농가에 있어서는 대부분 가구 총수입이 50%미만을 차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9) 영농의 주 생계수단의 최소규모를 쌀의 경우 농어촌 0.8ha, 도시지역 0.9ha로 제한하고 그 이하는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주 생계수단으로 하고 일정하지 못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으므로 생계수단의 최소규모를 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임

- 10) 농가피해 조사시에는 경지소유 면적이 0.1ha미만 또는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0.2ha미만인 경우에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11) 농작물의 침·관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지원이 요망됨.

다. 따라서 수해복구비 지원체계는 피해상황보고 → 중앙심사(예산확정) → 예산배정 → 집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수해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기부양을 위하여 피해상황조사 및 복구비 지원과 연관된 법령이나 지침상의 특례를 인정토록 하여야 할것임.

라. 수해복구비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응급생계구호비의 지급기준 상향조정, 고층건물의 수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조정, 침수상가·공장에 대한 복구비 지원, 침수주택수리비 지급기준 상향조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농경지 및 농작물의 복구지원 현실화, 축산 피해농가 지원기준 개선,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개정되어야 할것임.

VII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하천의 치수관리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단일한 관리주체가 일괄 관리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2. 문산읍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문천 개수공사, 문산시가지 내·배수장 기능확대, 문산도시 재개발 추진, 경의선 철도 및 통일로 송상과 곡능천 침수방지 대책사업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소요사업의 지원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3. 수해복구비 지원체계 및 비현실적 복구비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
4. 내·배수장의 신설 및 용량 증설시에는 배수용량에 적용하는 빈도를 현재 적용하는 빈도보다 올해의 홍수량을 감안하여 판단

5. 법원읍 금곡리의 금정석산, 덕천리의 우암물산, 마산리의 평산석산등 채석장 관리감독 철저
6. 금파취수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재해대비 교육 및 훈련을 실시
7. 도시지역내 하수구에 대한 주기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8. 법원읍 가야리 수중보는 날개벽이 없어 월류하여 농지가 유실되는 피해를 보았으므로 날개벽을 설치
9. 이번 수해시 일선 읍·면·동장의 수해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 문산읍의 경우 향양교에서 선유리 구간인 동문천 미개수 구간의 위험을 건의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음
따라서 수해방지대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일선 읍·면·동장의 요구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
10. 초리골 입구 교량과 법원교 2개소, 갈곡교 2개소는 교량이 좁고 낮으며 교각(암거)의 과다설치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해를 입었음. 관리청인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재가설
11. 지방도 56호선인 오산리~뇌조리 구간은 축구시설이 없어 우수가 도로상에 흐름으로써 폭우시에는 교통이 두절되고 있음.
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하여 축구 설치
12. 울곡3리 국도37호선 육교의 교각이 소하천상에 설치되므로써 유수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청에 건의하여 개선
13. 적성면 마지리의 적성영농조합법인의 불법적인 음식물쓰레기 반입으로 인해 이번 수해시 침수되므로써 주변농경지가 염분에 의한 피해를 보았음. 따라서 해당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
14. 갈곡천 수해복구 공사중 제6공구의 공사지연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해를 입지않도록 우기전까지 사업 완료

15. 수해시 배수공이 없어서 수해를 입은 곳이 있음. 갈곡천 수해복구 공사로 공사를 조속히 서두르기 위하여 8공구로 나누어져 있는 구간에 배수공 설치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IX. 건 의 사 항

[문산읍]

- 문산교-선유1리간 도시계획 도로 조기 완료
- 내배수장 증설 및 문산제1교변 배수장 신설
- 국제프라자~하동간 도시계획도로 승상
- 새능천 하류 암거 확장(선유4리 구 선유파출소옆)
- 내배수장 신설(선유4리 축사부근)
- 배수펌프장 설치(사목1리 반구정 입구)
- 독개지역 제방축조 조기완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마정배수장 조기 복구 및 비상발전기 설치(과주농조 소관)
- ※ 유수지 확장 및 변압기 이전 추진
- 월릉면 능산천 제방 보강(능산2리)
- 내포리 지역 배수펌프장 조속 설치(방호벽 하류, 과주농조 소관)
- 내포배수장 증설(과주농조 소관)

[파주읍]

- 연풍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방지 대책 수립
- 방축천, 학동천등 소하천 개량정비 및 배수펌프장 설치
- 연풍천, 대추벌천, 용지동천, 부곡소천, 향양천, 주내천등 소하천의 근본적인 개량복구
- 봉암1리 및 백석5리 주택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내배수장 설치

[법원읍]

- 갈곡천 제방(갈곡~봉암리)의 항구적인 보강공사
- 수해복구사업 조기발주 및 착공
- 금곡리 전지역 하천복구

- 법원2리, 동문1리 하천복구 시급
- 삼방리 하천 항구적인 복구
- 용담3리 전지역 하천복구

[월릉면]

- 능산, 내포지구 능산천 보강 및 내배수시설 설치
- 위전·덕은지구, 도내지구 내배수시설 설치
- 영태5리 침수방지를 위한 통일로 관통 배수구의 확장 및 소하천 바닥에 설치된 전차 저지용 구축물의 제거
- 영태5리 입구에서 아동교간 소하천 확장
- 문산천 제방공사 보강에 따른 내배수관문을 자동식을 겸한 이중 수문 및 전동화 시설 설치
- 수문관리자를 고용하여 조작 관리하므로써 전문화 및 인력난 해소
- 능산 1, 2리(이정골) 지역 배수문 증설,
- 배수로에 구조물(석축, 옹벽)을 설치하여 배수로 보강 요망(도내1리, 위전 3리, 덕은 3리, 덕은 5리)
- 도감골천 하류 제방 보강공사(양안 1,000M)
- 월탄 도로상 덕은 5리의 기존 배수구 확장 요망 및 인접한 마을안 하수구 재정비
- 덕은리 토석 채취지역 시설의 완전 복구 및 인접지 하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 보강 설치
- 위전리의 산사태 피해지 항구대책 강구

[탄현면]

- 낙하리 검이동 하천 임진강 제방 안쪽으로 소형 배수펌프장 설치 또는 수중모타 확보
- 지역여건에 맞는 배수펌프장 설치와 전기시설 설치 및 수중모타 확보(대동리, 만우리, 갈현 3리)
- 탄포천의 제방붕상 및 준설
- 세월교의 스크린시설 개폐기를 임월교와 같은 스크린 방식으로 설치
- 갈현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노후된 4개의 양수펌프 교체 및 동력전기용량 증설
- 송촌교 위치에 종합기능을 갖춘 배수갑문 설치 및 제방붕상(1m)

[교하면]

- 곡능천 하천 정비계획과 연계한 청용두천, 소지천 하천정비계획 수립
- 청용두천의 노후한 배수관문확장 및 배수펌프시설, 제방축조
- 청석교를 확장
- 소지천 정비 및 배수펌프장 설치

[조리면]

- 봉일천 배수펌프장 설치(봉일천 7리 곡능천 옆)
- 곡능천 및 주요지천 항구복구
 - 곡능천 : 등원2리 고산천 접합지점~고양시 경계
 - 장진천 : 능안리~설문교
 - 팔봉천 : 통일로~공능입구(홍익연수원앞)
- 봉일천시가지 사업 및 하수구정비 추진
 - 봉일천초교~조리면사무소
 - 조리면사무소~봉일천 7리 곡능천 제방
- 국지도56호선 도로변 측구 설치(등원2리~오산1리)
- 배수문 자동개폐기 설치(등원2리 말레지아교 옆, 고산천 하류)
- 통일로 횡배수관 재설치(등원2리 민바리앞, 봉일천3리 판문점주유소앞)

[광탄면]

- 신산리 도시계획도로 하천복개 공사 추진(751m)

[파평면]

- 늘노천 제방 보강 및 승상 요망
- 늘노천 변에 설치 가동중인 배수문 확장(3개소)
- 늘노천 전구간 준설
- 늘노천 덕천리 지역 낙차공 설치(3개소)
- 금파 1, 2배수장 증설
- 두포천 제방 승상(1.5m이상)
- 전구간 옹벽 및 석축
- 두포천 전구간 준설

- 두포천내 가설된 소교량 2개소 중 1개소 철거 후 중간지점 1개소는 잠수교 가설
 - 하천기본법에 의한 두포천 하폭에 맞게 가설
- 두포천내 설치된 보중 활용도가 낮은 보 철거(3개소)
- 두포천내 허가처리 가동중인 진명환경과 한일골재 부실운영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
- 평산개발 및 금정개발 부실운영에 따른 철저한 수방대책 및 완전복구
- 마산1리 용산천(마산교~마산1리 입구) 소하천 정비
- 두포·마산리 지역 농경지 매몰 및 유실지역의 복구장비 추가 지원
- 답곡천(금파2리~답곡리 간) 제방축조공사
- 늘노리 1대대~늘노천 입구로 유입되는 소하천(객식천) 제방 축조공사
- 늘노리 국도상에 가설된 교량 증설 요망(2개소)
- 늘노리 국도변 우체국 옆 늘노천 제방에 위치한 배수문 철거 요망
- 유종석~봉영사간 소하천 정비
- 이유희~유백현 간 소하천 정비
- 수송전자 뒤~원기운 논 소하천 정비
- 임진강 별장 여관 주차장 아래 설치된 하수구 증설
- 늘노리 간이상수도 시설 광역상수로 전환
- 산사태(10개소 7ha) 지역의 조기 사방공사
- 덕천리 내 소재한 우암물산 부실운영에 따른 철저한 수방대책 및 완전 복구
- 우암물산~657부대간 옹벽보강
- 657부대 입구 주택가 배수구 시설
- 657부대 입구 지방도상에 가설된 교량 증설
- 늘노천~213대대 다리 간 소하천 정비
- 덕천리 뱅스포츠 뒤 소하천 정비
- 만가대 입구 소교량 증설 및 상·하 지역 제방 축조
- 도로에 설치된 통로에 유수를 차단할 수 있는 문비 설치 및 내배수장 신설(문비 2개소, 내배수장 2개소)
- 울곡1리(1대대입구~국도변) 소하천 정비
- 울곡2리 국도상에 설치된 갈비철 암거 재시공
- 울곡2리 배수문 확장

- 을곡2리(마을회관~이형상 뒤) 소하천 정비
- 을곡3리 마을회관 뒤 소하천 정비

[적성면]

- 마지리 시가지에 설치된 배수관로 단면을 확장 재설치
- 2003년까지 예정인 두지~식현간 310지방도 조속히 개설
-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설치(가월리, 주월리)
- 임진강제방 축조
- 37번국도중 침수구간 승상(객현1리~울포리, 구읍1리)
- 마을간 농어촌 도로 정비·포장으로 예비도로 확보(객현1리~울포리, 구읍1리)
- 장현천 정비사업 조속 시행
- 간파천 재정비사업 조속 시행
- 323지방도를 용암~신산간 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확·포장 실시
- 설마리계곡내 산재된 상가를 일정지역으로 집단화
- 군사시설물은 관련군부대와 협의 새로운 형태로 설치

[군내면]

- 도로, 농로포장(서곡리, 하포리, 거곡리, 어룡천제방 등)
- 용산천, 수내천, 도라천, 어룡천 준설작업 및 돌망태 설치
- 경지정리(서곡리 도라산리, 점원리, 동파리, 하포리, 읍내리)
- 통일촌 전진농원 제방(직할하천) 축조 - 건교부에 건의
- 대성동 사천제방 축조 - 건교부에 건의

[금촌1동]

- 하상에 설치된 전차 장애물 제거
- 검산 배수장의 배수용량 증설
- 배수장 건물 및 설비를 제방높이 이상으로 승상
- 맥금 수문설치 지점에 배수펌프장 설치

[금촌 2동]

- 금능1통 곡릉천변 배수 펌프장에 대해 집중호우시 양수기 다량지원
- 금촌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및 금촌천과 곡릉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제방축조 및 배수펌프장 설치
- 곡릉천 하상 준설(말레이지아교 ~ 교하교간)
- 금촌천 하상준설 및 제방보강 마무리(아동천, 피압지천 합류지점간)